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신구비교대조표

2023. 12. 13

| 현 행 | 개 정 안 | 사 유 |
|--|---|--------------------|
| 제3조(단체표준인증단체의 조직) | 제3조(단체표준인증단체의 조직) | 중소기업중앙회 감사 지적 |
| ① 조합 이시장 전담조직을 둔다. | ①조합이시장 전담조직을 둔다. [별표 10]과 같다. | 사항 |
| | | (조합운영규정과 부합화) |
| 제5조(위원회 구성) | 제5조(위원회 구성) | |
| ④ 요령 제14조에 따라 인증업무규정에 심 | ④ 식제 | |
| 시위원회와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 고, 인증을 받은 자 또는 인증을 받고자 | | 중소기업중앙회 인증업무 |
| 하는 자는 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하 | | 규정 가이드 참조 |
| 여야 한다. | | (중소기업중앙회 지도점검 |
| | | 지적사항) |
| ③ 운영위원회는 | ③ 운영위원회는 | |
| 8. 신설 | 8. 인증을 받은 자 또는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위 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. | |
| 게이(2/) 자기 하도 초기) | 제20조(공장심사의 일부면제 등) | |
| 제20조(표준화활동 촉진) | 제20조(중장점사의 불구년제 중) | |
| 아시장은 한국가구시험연구원("가구 | 아시장은 한국살내건축시험연구원("가구시험연구 | 한국가구시험연구원에 |
| 시험연구원"이라 한다)으로 | 원"이라 한다)으로 | 서 한국실내건축시험연 |
| | | 구원으로 단체명 변경 |
| | | 됨. |
| | | |
| | | 7 . 14174171 41741 |
| 2. 개별기준 | | 중소기업중앙회 인증업 |
| 라. 표시정지 6개월 | 라. 인증취소 | 무규정 가이드 [별표 9] |
| 마. 표시정지 6개월 | 마. 인증취소 | 참조 가취 |
| | | (처분기준 강화) |
| [별표 4] | [별표 4] | |
| 라. 심사원의 출장비 | 다. 심사원의 심사비용 | 중소기업중앙회 지도점 |
| (2) 궉 | (2) 삭제 | 검 지적사항 |
| | | |
| | | |
| [별표 10] 단체표준인중단체 조직도 | [별표 10] 단체표준인중단체 조직도 | 중소기업중앙회 지도점 |
| 신설 | 신설(조직도 첨부) | 검 지적사항 |
| | | |
| | | |

| [별표 3] | | |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위 반 사 항 | 처 분 기 준 | | |
| T 2 7 8 | 1차 | 2차 | 3차 |
| 라. <u>인증받은자가</u> 외주생산 등 <u>인증받지</u> 아니한 자의 생산제품을 자체 제조한 제품으로 위장 하여 인증표시를 한 경우 | 표시정지 ¹⁾ 6개월 | 표시정지 6개월 인증취소 | 표시정자 6개월 |
| 마. <u>인증받은자가</u> 자체 제조한 제품을 OEM ²⁾ 등 다른 <u>인증받은자의</u> 제품으로 위장하여 인증표 시를 한 경우 | 표시정지 6개월 | 표시정지 6개월 인증취소 | 표시정지 6개월 |

